

국회에서 의결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9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박 상 기

●법률 제15757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관찰”을 “관할”로 한다.

제6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적용할 때에는”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소년법」 제67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 2018. 1.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